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- 사업명 : 범어지하도상가 설비자동제어시스템 기능개선
- 발주기관 : 대구시설공단
-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지멘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범어지하도상가 설비자동제어시스템 기능개선』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

-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-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-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(금일천오백만원정/₩15,000,000 부가세포함)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계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계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0년 11월 19일

발 주 기 관 대구시설공단



제조사 또는 공급사 (주)지 멘 스 (인)

